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11.03.02.  
북지도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1.02.17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1.02.22.
- 다. 상정일자 : 제159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(2011.03.02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손 문 수 청소행정과장

### 가. 제안이유
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한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다자녀를 둔 환경미화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,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며,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쉽게 순화하고 비표준어 및 띄어쓰기 등을 한글맞춤법 어문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. (신설 제2조의2)
- 2)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한 학자금 대여 대상자녀 수를 2명 이내에서 모든 자녀로 확대. (안 제8조)
- 3)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쉽게 순화하고 잘못된 띄어쓰기와 비표준어를 한글맞춤법 어문규정에 맞게 수정

### 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0 본 조례안은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대여대상 자녀수를 확대하여 다자녀를 둔 환경미화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며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띄어쓰기 등을 한글맞춤법 어문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.

0 본 조례안 중 조문별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, 안 제2조제2항 및 안 제3조의6제1항 중 “회계년도마다”는 합성어이므로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“회계연도마다”로 하고, 안 제3조의2제1항제3호 중 “그 밖의”는 어문규정에 맞게 “그 밖에”로 하며, 안 제11조제1항 중 “근속연수”는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여 “근속 연수”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 타 : 없 음